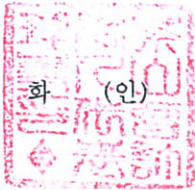


(별지 제2호 서식)

사학기관 감사증명서

| | | | | |
|--|-----------------------------------|--|-------------------------|--------------|
| 1. 학교법인 | ①학교법인명 | 신일학원 | ②이사장 성명 | 이 상 균 |
| | ③소재지 | 서울 강북구 솔매로 49길 20(미아동) | | |
| | ④전화번호 | 02-944-5992 | ⑤FAX | 02) 944-5999 |
| | ⑥회계연도 | (2015)회계연도 : 2015년 03월 01일부터 2016년 02월 29일까지 | | |
| 2. 설치·경영 대학교 | ⑦대학교명 | 서울사이버대학교 | ⑧총장 성명 | 허 묘 연 |
| | ⑨소재지 | 서울 강북구 솔매로 49길 60 (미아동) | | |
| | ⑩전화번호 | 02-944-5290 | ⑪FAX | 02) 980-2222 |
| | ⑫입학정원 | 3,270 명 | ⑬기타 동 법인 설치 · 경영 학교명 | 신일 중.고등학교 |
| 3.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 | | | |
| 구 분 |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요약(기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붙임) | | | |
| ⑭감사의견 | ○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 적정 | | | |
| ⑮한정사항 | ○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한정사항 : 해당사항없음 | | | |
| ⑯특기사항 | ○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특기사항 : 해당사항없음. | | | |
| ⑰기타⑮⑯이외의 증점 확인사항 관련 위반사항 | ○ 위반 해당 금액과 내용 : 해당사항없음. | | | |
| <p>사립학교법 제31조 제4항에 의거 회계감사기준 및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14.11.26)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증명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6년 04월 27일</p> <p>다산 회계법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이 기 화 (인)</p>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div>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학교법인 신일학원 이사장 이 상 균 귀하</p> | | | | |
| <p>첨부서류 : -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별지 제3호)</p> <p style="text-align: center;">- 재무제표 외 확인사항 집계표(교육부 고시 제2014-55호,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p> | | | | |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학교법인 신일학원

이사회 귀중

본 감사인은 첨부된 학교법인 신일학원의 일반업무회계 및 법인이 설립한 서울사이버대학교 교비회계의 2016년 2월 29일과 2015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 운영계산서, 그리고 2016년 2월 29일과 2015년 2월 28일 현재의 합산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합산자금계산서, 합산운영계산서를 감사하였습니다.

또한, 본 감사인은 동 학교법인 수익사업의 2016년 2월 29일과 2015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학교법인의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데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 및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 및 유의사항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학교법인 신일학원이 적용한 회계원칙과 중요한 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계속;

학교법인 및 설치학교 재무제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서 정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수익사업 재무제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학교법인 신일학원의 일반업무회계와 동 법인이 설치한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각각의 재무제표와 그 합산재무제표는 2016년 2월 29일과 2015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자금수지와 운영성과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법인 수익사업회계의 재무제표는 2016년 2월 29일과 2015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의 내용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98길 23

다 산 회

대 표 이 사



2016년 4월 27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16년 4월 27일) 현재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감사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학교법인 신일학원 및 그 설치 학교 그리고 학교법인의 수익사업회계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